

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73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17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수석전시관 및 컨벤션홀 준공에 따라 추가 시설물의 관람료 ·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지 입장료 및 개장시간과 자연사전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24시간 입장료 징수를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조정(안 제6조)
- 나. 입장료 현실화(안 별표1)
- 다. 컨벤션홀 이용료 신설(안 별표2)
- 라. 자연사전시관 관람요금 현실화 및 수석전시관 관람요금 신설(안 별표3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수석전시관 및 컨벤션홀이 준공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람료, 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개장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변경 조정하고 자연사 전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

- 안 별표1, 별표 2, 별표 3의 입장요금 및 시설 이용요금표, 관람요금표의 신설 및 인상되는 금액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와 공무원 근무시간외 입장하려는 관광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개장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조정하면 근무시간외 관광객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
- 답 : 타 관광지에도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고, 근무시간 외는 대부분이 우리 군민들이므로 군민의 편의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며, 관광성수기에는 연장 근무토록 하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있으므로 불편이 없을 것이며,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양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